

『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종호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학생들의 배움터인 구미시에 전입을 장려하여 정주의식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,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, 총무과 협의됨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대학생의 구미시로의 전입을 장려하여 인구증가 시책과 학생들의 정주의식 제고, 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 대학생에게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및 거짓 신청에 따른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통하여,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전입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 정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
-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큼 지원금 지급 후 사후 관리 등, 규칙 제정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